품질-2 시험평가 시, 軍시설/장비 사용 및 기술지원

【 한화시스템 건의요지 】

• 업체주도 체계개발 확대와 첨단무기체계 획득 과정 등에서 **업체 시설 부족에 따른 軍시설/장비 사용 및 기술지원** 필요

【답변 간략 요약】

• 기존 軍 시설 및 장비에 원활한 사용을 위해 **'20. 11월 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 등을 마련**

• **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지원 기능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**

○ 귀사의 건의사항은 업체주도 체계개발 확대와 첨단무기체계 획득 과정간 국가 시험인프라 사용 및 기술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.

○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'시험장 사용조정 협의체' 운영 방안을 포함한 시험장(시설) 활용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('20. 11월)

○ 또한, 국방연구개발 시험장(시설) 및 장비를 장비활용종합포털(DRES) 체계에 탑재 및 운영하여, 업체의 軍 시설/장비 사용 편의성을 증대하였고, 사업참여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을 과학기술촉진법 시행규칙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○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**업체가 주도하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**하기 위해 **정부기관(국과연, 기품원)의 지원 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**하겠습니다.

< 문의처 :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02-2079-6392 >

붙임자료 |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

□「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지원」(재정 추진 中)

제6조(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)
방위사업청장은 법제2조제5호가목과 나목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이 「방위사업법」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.

□「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」

제12조(대외기관과의 협력사항 등에 대한 보고)
① 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(감독부서의 장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방위사업청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(관계부서의 장)과 협의하여야 한다.
1. ~ 4. (생략)
5. 부설기구(관)의 장, 본부장 및 정책부서의 부장급 이상 주요간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
6.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82조의2에 따라 합참에 제출하는 시험장(시설) 사용계획
7. 그 밖에 청장(감독부서의 장)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6호에 따른 시험장(시설) 사용계획을 보고 시 미리 사용계획(안)에 대한 청 사업부서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의견반영여부를 포함한 검토결과를 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, 합참에 제출하는 시험장(시설) 사용계획에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□「국방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3조(공동활용)
① 연구인프라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·장비는 이를 구축한 출연기관과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유로 해당 연구시설·장비의 활용을 원하는 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
② ~ ③ (생략)
④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기관 시험장 공동활용을 위해 시험장 사용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, 관련 사업관리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업들이 포함되는 사업관리부서의 장 또는 감독부서의 장이 주관하고, 관련 기관 및 부서, 업체 등이 참여하는 '시험장 사용 조정 협의체'를 운영할 수 있다. 협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에 따른다.